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의 최신화를 추진하여 평창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명칭 변경 (제2조)
- 2) 신규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삭제 (제2조)
- 3)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업종 범위 명확화 (제4조)
- 4)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범위 확장 (제5조)
- 5)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명확화 (제12조)
- 6) 중복지원의 금지 내용 변경 (제16조)
- 7)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 내용 삭제 (제17조)
- 8)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 (제2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개정안은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sup>1)</sup>가 제정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오롯이 평창군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1)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1. 제정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이전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29.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0. “국가전략자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4차 산업 5대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이전기업”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지역경제”를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국가전략자원사업 중에서 지역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중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을 “보조금은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로, “등과 중복 지원”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업유치”를 “기업지원”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1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1조로 하며,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보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u>이전하는</u>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10. ~ 26. (생략)</p> <p>27.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투 <u>자하는</u> ----- ----- ----- -----.</p> <p>10. ~ 26.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28. “<u>첨단업종</u>”이란 「<u>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p> <p>29. “<u>물류사업</u>”이란 「<u>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u>」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u>물류터미널운영업</u>,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16호에 따라 <u>공동집배송센터</u>를 <u>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u>, 「해</p>

<신 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  
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  
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  
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  
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3년 이  
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  
서비스산업영위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  
로 신규 투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  
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0. “국가전략자원”이란 산업통  
상자원부가 선정한 4차 산업  
5대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을 영위하  
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  
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  
하는 이전기업-----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  
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  
종을 경영하는 신설·증설기업  
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있다.

② (생략)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국가전략 자원사업 중에서 지역경제-----  
-----.

②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중복지급의 금지) -----  
----- 보조금은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  
-.

<삭제>

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와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자이다.

<신설>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기업지원 -----  
-----.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 · 제23조 (생략)

제4장 보칙

<신 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 제25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삭 제>

제4장 보칙

제24조 ~ 제32조 (생략)

제26조 ~ 제34조 (현행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

# 관계법령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3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 개발사업, 물류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된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4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도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

1. 기업유치위원회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투자유치위원회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다만,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제25조(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지원되는 지원금과 달리 본 지원금은 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체결 및 시설 준공과 채용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과 경제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2554